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회칙

개정 2013.02.28.

개정 2017.10.25., 전면개정

개정 2018.05.28.

개정 2019.01.05.

개정 2020.01.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의와 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며 나아가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교 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본회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④본회 회원은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본회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

②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학총회,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 약학대학운영위원회, 학생회 집행국, 실험반 연합회,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한다.

제2장 약학대학생총회

제7조(지위) 약학대학생총회(이하 약학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구성) 약학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9조(권한) ①약학총회는 본회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②약학총회는 약학대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 약학대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의장) 약학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소집) ①약학총회는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8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약학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①약학총회는 본회 회원의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약학총회는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약학대학생대표자회의

제13조(지위) 약학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약학대회)는 약학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4조(구성) ①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집행국장 2인

②과대표 및 반대표

③약학대학 동아리 연합회장, 동아리 연합부회장, 실험반 연합회장, 실험반 연합부회장

제15조(의장) ①약학대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약학대회를 대표한다.

②본 회의의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제16조(소집) ①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단, 약학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은 대회 10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약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2. 본회 예, 결산의 심의 및 의결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5. 본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6. 집행국장의 소환 및 탄핵 결정
7. 학칙 개정의 건의
8. 기타 약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18조(권한) ①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②약학총회 소집 요구

제19조(안건 상정) ①의장 또는 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②재적 대표자 1/4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①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②본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 발의안의 경우 1/3 이상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대회 시행 세칙을 둔다.

제4장 약학대학운영위원회

제21조(위치)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이하 약운위)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2조(구성) ①학생회장, 부학생회장

②과대표 및 반대표

③약운위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약운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
2.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
3.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4. 본회 결산안 심의
5.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
6.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7. 약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8. 약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제24조(소집) ①정기회의는 매달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약운위에서 정한다. 단, 약운위의 논의를 요하는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결) 약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각 학년대표 1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5장 약학대학생회장단

제26조(임무 및 권한) ①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약학총회 의장, 약학대회 의장, 약운위 위원장, 집행국 의장이 된다.

②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 각 집행국 국장, 차장의 임명 및 파면, 약학대회 및 약운위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③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시 당선 직후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선출) ①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약운위에서 호선한다.

③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반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신분의 보장) 선출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6장 과대표 및 반대표

제30조(위치) 학년별 전공학과 또는 반의 대표자이다

제31조(업무) 과대표 및 반대표는 각 학과 및 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임기) ①과대표는 당선 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반대표는 선출 이후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선출) ①과대표 및 반대표는 각 소속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과대표 선출은 전임과대표가 주관하고 반대표 선출은 상위학년 과대표가 주관한다.

③과대표는 11월 마지막 주까지 선출한다.

④반대표는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선출한다.

⑤각 소속 구성원들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 3명 이상일 경우, 상위 두 명의 결선 투표로 정한다.

제7장 집행국

제34조(위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5조(구성 및 의장) ①집행국은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약운위에서 인준하며 각 집행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국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36조(업무 및 권한) ①사업 및 예산의 집행
②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③기타 집행국의 업무

제37조(부서 및 기능) 집행국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제8장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

제38조(구성)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으로 한다.

제39조(회장)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은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 자체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40조(활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9장 약학대학 실험반연합회

제41조(구성)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든 실험반 및 그 회원으로 한다.

제42조(회장) 약학대학 실험반연합회의 회장단은 약학대학 실험반연합회 자체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43조(활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학대학 실험반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10장 재 정

제44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5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조정하여 약운위의 조정을 거쳐 약학대회에서 확정된다.
2. 본회의 회비는 첫 해에 총 4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3.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집행국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총무(사무국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

4. 전과, 자퇴 등의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8학기 중 등록된 학기 수에 비례한 금액을 제한 후 환급한다. (단, 기타사유로 인한 환급은 약학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6조(예산 편성, 심의 확정) 집행국에서 예산안을 각 기구별, 시기별 사업 계획 별로 편성하고 약운위의 심의조정을 거쳐 약학대회 때 의결한다.

제47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그 외 기타 수입금으로 정한다.

제11장 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

제48조(선거) ①약학대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에는 학생회장 후보와 부학생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가 세칙에 따른 투표율을 넘기어 그 효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가 약학대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④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약학대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9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본회의 회원은 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약학대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학생회장 후보는 본회 회원으로 4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부학생회장 후보는 본회 회원으로 2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전체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4.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50조(선거 시기) ①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출직 임원은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약선관위)를 둔다.

②약선관위는 약운위 전원과 집행국 중 2인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약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된다.

③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선공고 후 24시간이내 약선관위에 접수해야 한다.

④선관위는 약학대학생회장단의 선거일을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52조(임기) 모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3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약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54조(구성) 구성원은 제22조에 준하여 구성되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55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3조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56조(소집과 의결) 제24조와 제25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장

제57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58조(업무 및 권한) 제26조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59조(선출) ①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1인으로 구성된다.

②비상대책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최다 득표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단, 득표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수의 2/3 이상을 넘지 못 할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③비상대책위원 전체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4장 전공 배정

제60조(시행규정) 전공의 배정에 관한 상세한 시행 규정은 전공배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5장 자치활동지원제

제61조(시행규정) 자치활동지원제에 관한 상세한 시행 규정은 자치활동지원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6장 회칙 개정

제62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학대회 재적 대표자 1/4 이상의 발의
2. 약운위의 발의
3. 회원총수의 1/8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

제63조(의결) 회칙 개정이 발의 시 약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20일 이내에 약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공포) 약학대회 의장은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를 따른다.